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집단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거래정책국”을 “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을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9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6. 위원회가 소관하는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 또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시행 총괄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과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9.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 경쟁규약의 심사·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16.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30.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5.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9.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0.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15.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의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5.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영
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6조의 제목 “(기업거래정책국)”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을 “국장”으로 한다.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22조제2항 후단 중 “44명”을 “43명”으로 한다.

제6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정원

제26조(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5]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6조 관련)

제26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4월 13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u>운영지원과 · 경쟁정책국 · 기업집단국 · 소비자정책국 · 시장감시국 · 카르텔조사국 및 기업거래정책국</u> 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① ----- ----- <u>소비자정책국 · 시장감시국 · 카르텔조사국 · 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u>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u>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u> , 사무처장 밑에 <u>기획조정관</u> 각 1명을 둔다.	② ----- ----- <u>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u> ----- <u>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u> ----- -----.
<신설>	제9조(조사관리관) ① <u>조사관리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조사관리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u>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 · 감독</u> 2. <u>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u> 3. <u>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u>

제9조 (생 략)

제12조(경쟁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

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6. 위원회가 소관하는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 또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시행 총괄

제7조의2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경쟁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

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과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0.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관리 및 관련 교육·훈련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장비의 확보·운영
12.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과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9.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

<u>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13. <u>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u> 14. <u>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u> 15. <u>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u> 16. <u>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u>	<u>준의 설정·운용</u> 13. <u>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u> 14. <u>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15. <u>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u> 16. <u>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u> 17. <u>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18. <u>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u> 19. <u>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u> 20. <u>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u> 21.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u>
--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30.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 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기업집단국) ① 기업집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1.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 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 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삭 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3조(소비자정책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제13조(소비자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7.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9.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방문판매 등에 관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5.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9.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0.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
행의 확인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
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
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
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4.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
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
과 및 이행의 확인

1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4조(시장감시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
책의 수립·시행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

· 육성·지원 및 감독

15.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14조(시장감시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
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
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

의 수립·시행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삭제

5.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8.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인

2.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의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
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
준의 설정·운용
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3.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
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
과 및 이행 확인
4.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
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
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
· 운용
7.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신 설>

다.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
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
과 및 이행의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
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의 확인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
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5.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
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
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제16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 거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 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 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 명을 둔다. ② 국장-----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 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 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 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

<u>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u> 7. <u>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u> 8. <u>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9. <u>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에 관한 사항</u> 11. <u>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u> 12. <u>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u> 13. <u>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u>	5. <u>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u> 6. 「<u>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u>」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u>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u>」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u>」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u>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u>
---	--

사항

14.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43명 -----

-----.

제6장 한시 정원

<신 설>

제26조(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
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
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0 - 2354